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26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5311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5. 5. 15.
판 결 선 고	2015. 6. 5.

주 문

1. 피고가 2014.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700,45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346,9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소장에는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취득세 6,047,370원의 부과처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선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26

가. 원고의 동생인 B 앞으로 1985. 4. 27. [redacted]구 C에 있는 D아파트 제2동 제303호(이하 '구 D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구 D아파트가 1999년경 재건축되면서 B가 [redacted]구 C에 있는 E아파트 제102동 제9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그 명의로 현물분양받아 1999. 12. 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B는 2011. 11. 13.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라. 원고는 B가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2.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02163호로 B를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9. 27. 청구 인용 판결을 선고받고, 위 제1심 판결이 서울고등법원 2012나86224호 항소기각 판결을 거쳐 2014. 8. 12. 확정되자, 2014. 11. 24.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합의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그 후 원고는 2014. 11. 24. 피고에게 이 사건 공유지분 취득가격에 위 취득이 무상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또는 같은 항 제8호가 정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840,000원, 지방교육세 684,000원, 농어촌특별세 684,000원의 합계 8,208,0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바. 그러나 피고는 2014. 12. 10. 위 공유지분 취득이 상속 이외의 무상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취득가격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위와 같이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700,45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346,92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26

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 12, 14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당초부터 실제로는 원고의 소유였으므로, 위 공유지분 취득이 무상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 이후에 B에게 별다른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이상 위 취득은 무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그런데, 세율은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요소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과세처분의 세율 적용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세율 적용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합의 이후 위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B에게 별다른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3) 그러나 한편, 갑 제4 내지 9, 13 내지 17, 21 내지 26, 28, 30호증의 각 기재, 제19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현재까지 미혼인 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26

실, ② 원고는 1968년경부터 다른 사람의 집에서 보모로 일하면서 꾸준한 수입을 얻었던 사실, ③ B는 1971년경 남편과 사별하여 부산에서 만화가게를 하며 딸 F, 아들 G을 키우다가 1980년경 서울로 이사온 뒤 투자를 잘못하여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잃고, 그 무렵부터 원고의 서울 중구 H 집에서 원고가 보모로 일하면서 얻은 수입으로 함께 생활하여 온 사실, ④ 그러던 중 원고는 1985. 4.경 B에게 B와 그 자녀들이 독신인 원고가 사망할 때까지 원고와 함께 생활하여 주면, 구 D아파트를 B 명의로 매수하여 원고가 사망한 이후에 B가 위 아파트를 다른 5명의 형제자매(I, J, K, L, M)들과 균분상속하지 않고 이를 단독소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의하고, B가 이를 수용하자, 위 구 D아파트의 매수 비용을 전부 지급하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⑤ 원고는 그 후 B 및 G과 함께 구 D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의 생활비, 교육비를 대부분 부담하고, 위 아파트의 제세공과금 일체를 지급해 왔으며, 구 D아파트가 재건축될 때에도 B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현물분양받기 위하여 재건축조합에 지급한 분담금의 대부분을 부담한 사실, 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도 B와 함께 생활하여 왔으나, B가 2011. 9.경 지병 치료를 위하여 딸 F의 집으로 이사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홀로 남게 된 사실, ⑦ 원고는 당초 기대한 것과 달리 B와 그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지 못하게 되자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 명의를 원고 앞으로 이전하라고 요구한 사실, ⑧ 그러던 중 원고와 B는 2011. 11. 13. L, M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을 이전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구 D아파트 및 이 사건 아파트를 B에게 명의신탁하거나 B와 그 자녀들이 독신인 원고와 함께 생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증여(부담부 증여)하였다가 B와 그 자녀들이 더 이상 원고와 함께 생활할 수 없게 되자 위 명의신탁 또는 부담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26

증여계약을 해지(해제)하고, 원고의 위 해지(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권 및 원고가 B를 위하여 지출한 제세공과금 및 생활비 등과 관련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원고가 위 각 권리의 일부를 포기하는 대가로 B로부터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음으로써 위 분쟁을 종결짓기로 하는 일종의 화해계약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위 2)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의 공유지분 취득이 무상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수

판사 강효인

판사 장인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26

별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2장 취득세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제12장 지방교육세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26

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 제1항 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각 목 생략)

■ **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끝.